

「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김영태 의원 외 1인

2. 찬 성 자: 김근한 의원 외 8인

3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야간경관 개발 및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, 구미시 지역 관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야간관광 및 야간관광사업의 정의 규정(안 제2조제9호 ~ 제10호)
-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(안 제22조)
-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(안 제23조)

5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, 제76조
 - 「관광기본법」 제6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, 제28조

6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야간관광을 포함한 관광산업의 발전 여건을 조성하고자 발의된 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대표적인 야간 경관 명소가 부족한 우리 시의 실정에서, 본 조례의 제정으로 관내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정책 추진과 관광 자원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, 일몰 이후 시민들이 야간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야경 콘텐츠의 개발로 지역관광의 진흥과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사료됨.
- 향후, 집행부서에서는 계획 수립 시 야간경관 인근 주민의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조명 종류·조도·배치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, 효율적인 전력 소비 등 야관경관 조성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의 해결 방안이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- 또한 주변 건물, 경치와 조화를 이루는 도시 경관을 위한 전문가 의견이 계획 수립 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며, 조성 후 유지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하여 경관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.